#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110

발의연월일: 2022. 11. 4.

발 의 자:김종민·박성준·백혜련

이용우 • 황운하 • 이원욱

박재호ㆍ허 영ㆍ이병훈

송갑석 · 김영배 · 김의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카드 또는 잔액을 충전한 이후 차감하여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잔액은 환급하도록 하며,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되,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자금융업자"를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예치 등) 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預置), 신탁, 지급보증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관리기관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 제19조의4에서 "보유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별도관리된 선불충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보유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 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관리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에게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⑥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보유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수 있다.

- 1. 보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제3항에 따라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보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 ⑦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가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관리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운용, 그 밖 에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이 경우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는 선불전자 지급수단발행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9조의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① 제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가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증기관이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해당 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보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보유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증기관에 제공할수 있다.
- 1. 보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제2항에 따라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보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요건 및 체결 방법,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보유자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 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해당 내용을 보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 별도관리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충전금의 예치 등 및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 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u> <신 설></u>

개 정 안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전자금융업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u> 자"라 한다)</u>-----

\_\_\_\_\_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예치 등)

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 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預置), 신탁, 지급보증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이하

- <u>"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u> <u>다.</u>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물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선물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관리기관은 선불전자지급수 단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 제19조의4 에서 "보유자"라 한다)의 청구 에 따라 별도관리된 선불충전 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보유자 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

   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관리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에게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

- 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⑥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관 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불충 전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보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 보
- 2. 제3항에 따라 보유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보유자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가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 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관리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 운용, 그 밖에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 금의 범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

<신 설>

<u>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u>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자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① 제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 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선불 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자가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증기관이 지급보 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해당 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 여야 한다.

③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보 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을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보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

<신 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 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

보

- 2. 제2항에 따라 보유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보유자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계약의 요건 및 체결 방법, 제2 항에 따른 지급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보유자 보호조치의 고 지의무) ① 제19조의2 또는 제 19조의3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선불전자지급수 단발행자는 해당 내용을 보유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세51조(과태료) ①
호

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_\_\_\_\_\_

- 1.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19조 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 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 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 별도관리한 선불충전 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한 자
- 3. ~ <u>6.</u> (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